경실련 제20대 대선 개혁과제(5분야-54과제-146정책)

※ 볼드체 표시 과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개혁 과제	세부 과제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기업집단 출자구조 2층구조로 제한(모회사-자회사, 100%출자 적용제외) 구조적 금산분리(주요 금융회사의 주요 실물회사 동시지배 금지) 와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적용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규제, 불공정행위 규제,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적용 등)
2	사익편취 규제의 전환	1.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 동의제(MoM) 상법에 도입 2.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강화 3.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3년내 의결권 금지 4.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생절차 준용 및 분할/합병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 금지
3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위한 종합개혁	1. 산업별 노사정 상생모델 통한 사업재편과 적극적 고용정책 시행 2.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몰락, 노인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4	정의로운 상생위한 플랫폼 기업 ESG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1.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 강화위한 정책적, 법적 지원 2. 정의로운 연대협력기금 조성으로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3. ESG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확대 및 ESG채권과 펀드 활용에 대한 공시 의무화
5	기술탈취 방지책 강화	1. 기술탈취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생법 개정 2.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도입
6	정책·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1. 기획재정부 예산과 정책기능 및 재정기능의 분리 2. 금융감독원의 독립기구화 3.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 및 제도 보완
7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	1.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및 시스템 개선 2.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강화 3. 공매도 투기 등 불공정거래 제한 및 관련 공시제도 강화
8	서민금융정책 및 불평등한 신용평가제도 개선	1. 소상공인 취약산업 안정기금 조성 및 합리적인 금리 규제 2.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별 제거 및 합리적 신용평가 3. 카드론 만기상환 시 신용리스크 담보금 환급 및 저신용 계층 신 용회복 지원 4. 대부업의 고금리 불법대출 근절

9	디지털 인권확립 및 안전강화	1. 헌법에 정보기본권 신설 2. 디지털 기본법 신설 3.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
10	디지털 선진국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ODA 지원 확대 디지털 협력을 통한 SDGs 선도 디지털세 선제 대응을 통한 공정한 국제조세질서 제시 디지털 범죄 글로벌 공조체계 적극 제시
11	혁신과 포용적 성장 위한 세제개혁	 투자자 중심의 기술혁신 조세우대를 혁신 기술인력과 창업자에 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 소득과세·소비과세·자산과세의 각 단계에서 법인과 자연인의 조세부담 합리적 조정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달 세원 도입(지대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
12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 제정 2. ILO 핵심협약 및 노동조합법 재정비 3. 근로기준법 1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4.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적정임금과 안전 보장
13	농지투기 근절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농지 공개념으로서의 농지법 전면 개정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GMO 완전표시제 도입

2.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11개)

	개혁 과제	세부 과제
1	강제수용택지 공영개발 강화	 공공 민간 공동개발 금지 및 100% 공기업 주도 공공개발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중단 및 100% 공공주택 공급 택지개발 사업비 및 분양원가 상세내역 온라인공개 개발이익 발생 시 국고환수(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및 부과율 50%로 인상)
2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1.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 50% 환수 2. 신규주택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3. 무분별한 용도지역 종상향 및 용적률 완화 금지 4. 원주민 내몰림 방지 위한 동의율 강화 및 상생지원정책 마련
3	무주택서민 주거권 강화	1.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월평균 20만원 이상 주거비 지원 2. 다양한 규모와 공급방식으로 공공주택 재고율 20%까지 확대 3.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폐지 및 경매방식 우선 매입 4. 10년 주택 분양전환 시 최초주택가격 기준 분양전환가 책정
4	지방중소도시 중심 도시재생사업	1.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구 일원화 및 광역시에 결정권 이양

		2. 도시재생기구 전문 활동가직 신설
5	올바른 부동산시장 진단위한 통계구축	1. 부동산통계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투명공개 및 검증 2.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주간통계는 즉시 폐지 3. 주택공시가격 폐지 및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으로 이양 4. 모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이상으로 제고
6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인력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치 내국인 고용여건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적정임금제) 외국인 고용은 인력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어 주요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인원 확대 및 지방정부에 단속 권한 부여
7	직접시공제 정착	1. 공공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서에 직접시공 최소비율 명시 2. 공공사업의 100억 이상은 원도급자 50% 직접시공 의무화
8	계속비 계약 적용 원칙 실현	1. 공공건설공사는 계속비계약 예산편성 원칙 적용 2. 지자체 사업 수시 평가 및 장기지연 시 패널티 부여
9	민간제안 민자사업 폐지	1. 민간제안 사업방식 폐지 및 예산부족시 정부고시 방식으로 시행 2. 단독입찰시 유찰제 도입 3. 위험분담형(BTO-rs), 손실공유형(BTO-a) 민자사업 폐지 4. 민자사업의 상시적 정보공개 의무화
10	건설사업 사후평가 정상화	1. 공공건설사업 300억 이상 사후평가 법제화 및 미이행시 처벌 2. 민자사업 완공 후 5년 이내 사후평가 실시 3. 주요 (갈등)사업에 대한 백서발간 및 공개
11	공공사업장 체불방지	1. 발주자가 노무비·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제 의무화 2. 선급금 지급율을 현 70%에서 10%로 인하(최대 20%)

3.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16개)

	개혁 과제	세부 과제
1	권역별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1.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2. 공공병상 20% 확충 및 공급기반 마련
2	건강보험제도 개혁	1.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일원화 2. 의료적 필수 비급여의 법정화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도입 3. 포괄수가제의 전 병원 적용 및 수입에 지출맞추는 총액제 도입 4.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기준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의 급여비 국고지원 5.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3	의료이용체계 강화	1.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2. 지불제도 개편 및 적절한 평가체계 구축(목표 기한 5년) 3. 일차의료 전공의 교육의 정부 지원과 타전문의 재교육 실시

4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1.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및 업무 분장의 명확화 2.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역할 명확화 3. 지역거점병원 감염병 상시 치료체계 구축
5	의료분쟁조정 내실화	1.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해체 및 소비자원으로 일원화
6	보편적 아동돌봄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18세미만으로 확대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아동수당체계로 통합 장애아동수당과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 제정 아동(3~6세) 돌봄과 교육의 통합(교육부 제공) 가족돌봄휴가 연30일 확대, 휴가급여 최저생계비 제공
7	노후소득보장 위한 연금 개혁	1. 공공·민간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체 구축 및 시행
8	여성장애인 일자리 정책개선	1. 여성장애인 포함 성별·장애특성별 노동 수요에 대한 조사 실시 2. 고용과 복지서비스 결합 제공
9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 공공직영 사회서비스 인프라 최소 20~30% 이상 확충 2. 사회서비스원 '독립채산제' 폐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10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1. 소비자정책 전담부서(가칭 "소비자부") 신설 2. 소비자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평가기관 신설
11	언론의 시청자권익 보호강화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허위표현 처벌에서 소수자에 대한 증오표현 대응으로의 전환 임시조치제도에서 발화자에 대한 권리(이의제기시 즉시 게재권, 손해배상청구권) 실현
12	신기술시대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 개인정보법으로 일원화 2. 정보 주체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3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	1. 자발적/강제적 리콜제 강화 등 법제정비
14	소비자 피해예방 집단소송법 제정	1. 집단소송법 조기 제정(소송허가 시한 3개월 설정 및 소송불허이유 상세기재, 소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인지액 경감, 입증책임 전환 내지 경감, 증거개시 등 포함)
15	이용자 보호위한 상품권법 제정	1. 상품권 거래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 위한 상품권법 제정
16	소액사건 재판의 시민권익 보장	1. 판결 이유 기재 및 상급심 보장하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4.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12개)

	개혁 과제	세부 과제
1	고위공직자 윤리강화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및 1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4급으로 확대 및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 재산 신고시 공시가격 및 시장가격 동시기재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공개 및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2	인사시스템 개혁	1.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기준, 원칙 마련 및 사전검증시스템 구축
		2.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표 결제 도입 및 청문기간 확대
3	정당의 보조금제 개혁	1. 정당의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정 2. 정당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매칭하는 대응적 보조금 제도 도입
4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	1.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및 공천제 개혁
5	전관예우방지	1.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2.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5년으로 연장
6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1. 형사사건 미확정 판결서 온라인 공개 및 열람 수수료 폐지 2. 국민참여재판 개선
7	법원 인사 개혁	1.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활동 및 심의내용 공개 2.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3. 법원 조정위원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 마련
8	검찰의 중립성 강화	1.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화 2.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9	지방자치제도 헌법보장	1.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립 위한 개헌
10	지방분권 실현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내국세 비율 22%로 상향) 자치입법권을 조례에 직접 위임하여 조례제정 범위 확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11	주민자치 실질화	 1. 읍, 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 2. 읍면계층에 통합형 주민자치 모형, 통리계층에 주민주도형 주민 자치모형 각각 적용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주민공동체 참여의 플랫폼으로 전환
12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1. 지방행정체제 개편(광역자치단체 확대, 기초자치단체 축소) 2. 광역도시계획 통합 및 단일화된 대도시권 계획으로 개편 3. 국가위기지역 설정 및 지원확대

5.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2개)

	개혁 과제	세부 과제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합의 이행 위한 로드맵 구축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남북 합의 이행 위한 '(가) 남북정상합의 이행 워킹그룹'설치 평화협정 체결
2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북한 SOC 시범개발 착수 및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북한 농업의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 현황과 문제

- 한국 경제는 과거 정부주도형 개발체제와 모방 및 추격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강점이었던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까지 심화됨. 제조업은 2019년 GDP의 25.3%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하락이 두드러짐
- 2019년 기준 30대 재벌의 경우 GDP 대비 자산총액이 91%, 10대 재벌은 74.2%, 1대 재벌(삼성)의 경우 22.1%임. 동년 GDP 대비 매출액 비중도 30대 재벌 66.3%, 10대 재벌 55.8%, 1대 재벌 16.4% 수준임.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아닌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고, 경제권력이 막강하여 시장과 정치까지 흔들고 있는 것임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국가차원에서 다원주주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함. 경제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장 벽으로 작용하고, 사업기회 박탈,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킴. 기업차원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의 무력화를 가져옴. 경제력 집중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및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음. 결국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 경 제로 이행의 지체, 포스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 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개혁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방지가 필요함

- 1. 재벌/대기업 집단규제의 방향성 재정립 : 기업집단 출자 2층으로 제한 (계열사에게서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출자금지) 및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적용제외
 - 4대 또는 10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으로 순차적용
 - 3층 구조를 예외적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1/2 이상을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으로 선출
- 2. 구조적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감독 : 주요 금융회사(그룹)와 주요 실물회사(그룹) 동시 지배 금지 (그 외 복합금융그룹은 통합감독 체계 적용)
- 3. 플랫폼기업 독과점 방지(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및 불공정행위 규제, 복합금융그 룹통합감독체계 적용 등)

│-2. 사익편취 규제의 전환

□ 현황과 문제

- 현재 재벌들은 황제경영으로 불릴 만큼, 소수지분으로 그룹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재벌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의 확대와 이로 인한 황제경영, 편법적 세습,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익편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배주주들의 사익편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공정거래법 상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분규제가 있으나, 이는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총수일가 지분 비율만 조정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상법 일부 개정을 하며, 1명 정도 감사위원 분리를 선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통해 총수일가와 우호적인 이사회에 대해 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현재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많지만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는 것이 문제. 때문에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익편취는 물론,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M&A, 기업분할(인적 및 물적분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지배주주들은 이익을 보지만, 소수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임
-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또는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는 대기업집단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도 아님.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보다 넓게 상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1. 공정거래법 규제에서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 중심의 자율규제로 대전환하며, 총수일 가와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동의제(Majority of Minority) 상법에 도입
 - 총수일가나 주요 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 총수일가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의 보수와 퇴직금
 - 계열사간 기업결합(소수주주 3/5 동의제)
- 2.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강화
 -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와 스튜어드십코드 실행
- 3.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금지
 - 의결권을 매년 10%, 5%씩 제한을 강화하며 3년안에 금지
- 4.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생절차 준용 및 분할/합병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
 -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에 신주발생절차를 준용
 -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 합병할 경우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 금지(상법개정)

│-3.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위한 종합개혁

□ 현황과 문제점

- 재벌로 편중된 경제구조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고용 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과의 격차 심화로 인해 청년실업, 이른 퇴직, 자영업의 몰라, 노인 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은 붕괴되고 있음
-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와 고탄소배출 구조의 한국 제조업의 산업 구조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함. 특히 전속거래 체제에서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탄소중립정책의 시행은 협력업체, 납품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용과 실업 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임
- 하지만 현 한국 제조업의 산업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전통적 노사문 제로는 해결이 불가능 함. 특히 산업전환, 사업재편 시 지배주주들은 충분한 이익을 받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도 충분 치 않아 희생이 되고 있는 상황임

- 1. 산업별 노사정 상생모델을 통한 사업재편과 적극적 고용정책 시행
 -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 노사정 공동 재교육과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필요(노키아 브리짓 프로그램 고려)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신생기업 창업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사업 시행
 - 플랫폼 노동자 보호(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 2.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몰락, 노인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 대·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
 - 재벌의 단가후려치기 방지, 경제력집중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임금 등의 격차해소
 - 재벌/노동/재정/복지에 이르는 종합적 개혁
 - 자영업 문제와 노인빈곤 해소하기 위한 기업연금 정상화,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실질적 정년연장
 -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참여와, 근속기간 연장, 연금으로 인한 노후생활 가능한 경 제구조로 전환
 - 연금 생활자를 늘려 자영업에 대한 잠재적 진입을 줄이고, 자영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영업 환경 개선

| -4. 정의로운 상생위한 플랫폼기업 역할 강화 및 ESG 공시강화

□ 현황과 문제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분위기에 따라 플랫폼 비즈니스가 급부상.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빠르게 확장.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대응을 위해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이 불가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수수료 부담 반영의 제품가격 인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과 갈등 상황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정작플랫폼 기업이 ESG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플랫폼 기업이 거대화되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논의는 충분치 못함
- 최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음. ESG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내용은 유사하면서도 금융이 결합되어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책무로 이를 활성키 위해서는 시장에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가 이뤄져 자율적 감시가 가능토록 공시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2021년 12월 ESG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으나, 실효성 문제도 있는 상황임. 나아가 한국거래소 ESG공시 확대의 지연(2030년 이후 공시의무)도 문제가 되고 있음

- 1.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법적 지원
 - (생태계 강화) 제 문제에 플랫폼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협력의 장 마련
 - (정책정비) 플랫폼 거래 특유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상생거래 활성화 여건 조성
 - (플랫폼 기업 주도의 문제해결 의무화 제도 신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협력 의무화
 - (외주업체 안전 관리) 플랫폼 기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 업체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가입지원, 교통질서 준수 앱 설치 및 안전 관리 주관 등 정의로운 투자 참여 유도
- 2. 정의로운 연대협력기금 조성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플랫폼 경제 하,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및 교육,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투자목적의 기금 조성
- 3. ESG 사업보고서 공시의무화 확대 및 ESG채권 및 편드 활용에 대한 공시 의무화
 - ESG 정보에 사업보고서 공시의무화(노동/공정거래/환경법 등 비재무적 공시 포함)
 - 한국거래소 ESG공시 확대 실시 및 ESG채권 및 펀드 활용에 대한 공시 의무

□ -5. 혁신 유인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책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년간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246개이며 피해금액은 5,400억 원에 달함. 그럼에도 대다수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들은 재벌·대기업들의 보복과 입증문제로 인해 고발 등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음
- 혁신이 일어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방지를 통한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서는 재벌 중심,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를 벗어 날수 없음.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아 기술탈취가 만연하고, 재벌·대기업의 전속계약 구조로 인해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 이는 중간재 산업에 그치지 않고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대기업도 혁신의 유인이 감소함
- World Economic Forum 2016~2017 GCI에서 한국경제는 낮은 수준의 재산권 (64위) 과 지적재산권 보호 (68위)도 지적됨
-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17일 공포된 상생법 개정안은 여전히 낮은 처벌수준과 허점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대표적 법안들마다 보호대상이 상이한 문제도 있어, 법제도의 개선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함

- 1. 기술탈취 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생법 개정
 - 손해배상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배 또는 상한선 없는 손해액
 - 비밀유지계약체결 이전의 탈취 문제와 이중계약에 대한 처벌
 - 거짓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수준 상향
- 2.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징벌배상 특별법 제정
 -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 업법,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
 - 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 민사소송 원고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
 -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 -6. 미래지향적 금융조직 개편

□ 현황과 문제

- (감독기능의 독립성 결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수직적 관계로 인해 감독기능 또한 금융위에 좌우되는 상황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음. 특히 저축은행 사태는 대표적인 감독실패의 사례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 사이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감독기능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임
- (기능과 역할의 상충) 현재 국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담함. 금융정책은 대내와 대외가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로 별도로 정책을수립할 경우 혼란과 모순이 발생함. 이러한 비효율적인 기능은 금융의 국제화 상황속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대응에 있어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보호 미약) 2008년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 현재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주력하고 있고, 약탈적 대출, 불법 추심, 금융상품에 대한 피해 등 소비자보호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현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지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아 인력은 물론, 독립적 소비자보호기능도 약한 상황임
- (기재부의 예산과 조세, 재정, 국제금융정책 등 권한 집중) 현 기획재정부가 조세권 과 예산권 등 재정의 투입과 산출 기능을 모두 갖고 있음. 나아가 국제금융정책기능 까지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때문에 재정 투입과 산출, 정책 간의 상호 균형점을 찾기 어렵고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책의 실효 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힘의 남용까지 발생할 수 있음

- 1. 기획재정부 예산과 정책 및 재정기능 분리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통합
 -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기능을 분리 (가칭)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통합
- 2. 금융감독원의 독립기구화
 - 현 금융위원회(감독+정책) 체제를 수정하여 금융감독기능의 독립기구화
- 3.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 및 제도보완
 - 금융감독기능 중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간의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위해 건전성 감독 위주의 금융감독 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별도 기구 필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타 부처 기능역할도 통합

│ -7.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

□ 현황과 문제

- 주식시장 제도 및 거래시스템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지배주주, 개인투자자 사이에 불공정 및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많음. 특히 공매도는 제도 도입 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음. 특히 2018년경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및 삼성증권위조주식 배당사건을 계기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아 집
- 지난 2020년 금융위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일정부분 개선을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한국거래소의 장중 실시간 호가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나 인력, 거래정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감시 적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나아가 예탁원에서 '대차거래확정시스템'을 부분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고, 불법공매도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는 현재 배제된 상황. 특히, 공매도 전산거래시스템이 의무 도입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공매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임
- 공매도 업틱를 등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시장조성거래자 역시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고 있음. 공매도 작전세력간 재대차, 호가담합, 자전거래(통정거래),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재벌 등 경영대주주가 저가 M&A 및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돼 불공정거래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 1.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공매도 60일 의무상환일 지정 및 증거금 140%로 상향
 - 대차기간 내 불합리한 신청 매도리콜 제도 개선
 - 업틱률 예외거래 폐지 확대, 업틱률 위반 제제 및 의무호가 제도 강화, 하위종목 시 장조성거래를 위한 유동성 공급의무 부과
- 2.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강화
 - 선진국들처럼 불법공매도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형사 처벌, 징벌배상
 - 수기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전산거래시스템, 실시간 주식잔고관리시스템 도입, 대차 ● 공매도잔고 공시제도 개선
- 3. 공매도 투기 등 불공정거래 제한 및 관련 공시제도 강화
 - 공매도 세력간 재대차거래, 호가담합, 차명거래, 자전거래(통정거래) 조사 및 처벌
 - 공매도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일일 거래량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 경영권 승계 목적의 경영대주주 등 5%이상 지분보유 대대주의 주식 사채 대여 금지, 1%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의 보고 공시의무 강화, CB BW 권리공매도를 악용한 저가 유상증자 제재 및 불공정 주가희석 방지

│-8. 서민금융정책 및 불평등한 신용평가제도 개선

□ 현황과 문제

- 자영업자, 일반 급여소득자 등 소득이 줄면서 LTV DTI 재조정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은행창구에서는 중도금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마저 어려움. 나아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신용대출도 막히면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사업자 등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서민금융 실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용대출 정책은 부재함.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등 서민들은 신용평가 등급이 낮다는 이유(5등급 이하)만으로 실제 상환실적과 관계없이 가산금리가 더 높고 신용차별 갭 및 비대청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대출 미상환 시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및 파산●회생에만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함. 또한 서민금융 기금운용 부재 및 정책금융 예산 한계로 서민금융은 민간금융기관에 대부분 의존함. 현행 서민금융의 높은수요와 경쟁으로 인해 최근 취약계층 등 저신용자들은 버팀목자금과 생존에 필요한가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 및 대안대출에 내몰리고 있음

- 1. (정책금융 지원) 소상공인 취약산업 안정기금 조성 및 합리적인 금리규제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협력 안정화기금 조성' 및 국책은행(중소기업 산업은행) 등 신용대출 지원 / 취약산업 저금리 대출지원 /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 2.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별 제거 및 합리적인 신용평가
 - 개인 상환실적(조기/중도/만기) 따른 합리적 우대금리, 가산금리 인하 감면요구권
 - 과다채무자, 취약계층 등 저신용자에게는 원금상환 시 격려금 인센티브 지원 (단, 부동산 ● 주식 등 담보차입 신용투자 제외)
 - 매출 소득에 상관없이 과거 상환실적에 따라 합리적 신용평가 및 가산금리 책정
 - 업종별 신용평가 대출금리 산정기준 공개 및 플랫폼 금융 표준화
 - 지급결제 및 저축 등 이용실적이 높은 취약계층 수수료 감면혜택 확대
 - 예대마진(수신금리<여신금리) 갭 완화 및 IB지원 확대
- 3. (여신사) 카드론 만기상환 시 신용리스크 담보금 환급 및 저신용 계층 신용회복 지원
 - 기본금리와 신용리스크담보금리 이원화, 만기상환 시 신용리스크담보금 고객 환급
 - 미회수 연체금 및 신용리스크담보금 일반고객 대손충당금 전가 제한
 - 카드이용 소비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Cash Back 등 인센티브 제공. 신용카드 돌려 막기 제한 및 저신용 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 4. (대부업) 고금리 불법대출 근절 및 적발시 부당이득금 환수, 형사처벌 강화/기업 대 안대출 및 IB확대

│-9. 디지털 인권 확립 및 안전강화

□ 현황과 문제

-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통신과 인터넷은 실생활의 필수재가 되었고, 최근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정보인권)이 인권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디지 털 인권을 위해서 정보 격차 및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접 근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의무 등을 헌법 에 담아야 함. 현재 정보기본권이 부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부재, 매년 예산의 수시 변동, 산업적 논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방지 노력이 무력해짐
- 디지털기기의 네트워크화는 생활의 편리함 이외에 보안의 취약점이 있음.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돈, 개인정보, 기업 기밀탈취, 기업경영 방해 등 디지털 범죄 피해가 연간 1천만~6조 달러에 달함.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회의가 일상화되면서 화상카메라에 의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 사례도 많음. 더구나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직접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주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줌
- 디지털 범죄와 관련해 사회전반으로 안전 의식이 낮으며, 형량도 낮고, 관용 판결이 많음. 민간 보안 전문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 감시 정책 또한 부재하고, 보안 전문 가양성 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임

- 1. 헌법에 정보기본권 신설
 -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 실질적 보장, 정보 격차 및 정보 독점 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 소 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의무 등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함
- 2. '디지털 기본법' 신설
 -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권, 데이터 이동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 침해 방지 등
 - 플랫폼(망) 중립성, 플랫폼 반독점, 금융거래 등
 - 네트워크(유선-광(optic), 무선-5G, 6G, WiFi) 인프라 고도화
 - 통신/인터넷 서비스 국가 책무 의무화. 사회적 취약계층에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 강화
- 3. 디지털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형량 강화 및 엄격한 법 적용(불관용 원칙 고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홍 보 의무화
 - 보안 전문가(또는 윤리적 해커) 양성 프로그램 적극 시행
 - 민간 보안 전문가(또는 윤리적 해커)를 통한 자율적 감시기구 지원
 -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모든 디지털기기의 보안(암호화) 기능 탑재 의무화

│-10. 디지털 선진국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현황과 문제

- 지난 2010년 OECD DAC에 공여국으로 가입하였으나, 국제무대에서의 그 위상은 여전히 낮고 정책적 영향력은 미미한 상황임.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에 추가로 '디지털 협력 (Digital Cooperation)' 과제 준비중임
- 조세회피, 디지털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OECD/G20 국제조 세(디지털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 조세에 기여할 필요성도 있음
- ODA 지원 규모가 여전히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적으며, 국제무대에서 정책적 영향력 도 낮아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 지원과 효과적인 경제 외교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내 SDGs의 실천 역량 또한 낮고, 대통령 직속이 아닌 환경부 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제적인 정치적 위상도 매우 낮음
- 디지털세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국내 기업들에 대한 피해와 역차별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디지털세 징수 방안은 기존 디지털(플랫폼) 기업만이 아닌 디지털행위가 많은 글로벌 제조 기업도 포함시키고 있음
- 디지털 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외를 가리지 않고 국경과 언어 등 의 장벽을 넘어 발생함에 따라 보안 강화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야 함

- 1. ODA 지원금 증액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ODA 지원 확대
- 2. 디지털 협력을 통해 전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선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 UN SDG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위상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SDGs 에 '디지털 협력' 과제 추가
- 3. 디지털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국제조세 질서 제시
 - OECD/G20 BEPS에 걸맞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 제시
 -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활동 지원
- 4. 디지털(사이버) 범죄에 대한 글로벌 공조 체계 적극 제시
 - 비정부 국제 조정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의 국제화 필요
 - 보안 전문가를 위한 면책 조항 시행을 위한 원칙 수립, 국제 표준 및 모범사례 개 발
 - 디지털(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글로벌 시민 안전 의식 공유

□-11. 혁신과 포용성장 위한 세제개혁

□ 현황과 문제

-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그 구조가 완성된 것으로서 이미 40여년이나 경과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와 경제산업구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체제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양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왔음
-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경제 전방위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는 세제개혁을 통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조세부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이념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의 후과로 인해 '이윤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지대친화적'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사회와 혁신성장'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① 자본이득보다 노동소득,② 지대소득보다 투자소득,③ 소득과세보다 소비과세,④ 법인과세보다 개인과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만일 신정부에서 현행 '이윤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지대친화적 조세제도'를 '임 금주도성장론에 기반한 혁신친화적 조세제도'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 면, '부동산에 기초한 지대자본과 혁신으로 포장된 독점기업의 지대추구'로 인해 우 리나라의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경제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1)

- 1. 혁신성장을 위한 현행 투자자 중심의 기술혁신 관련 조세우대를 혁신 기술인력과 혁신 창업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
 - 혁신창업자 등이 "Death Valley"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특허박스제도 도입 또는 혁신 관련 조세지출시기와 방법 및 기간 등을 중심으로 조세치원체계 개선
 - ① R&D 비용추가공제 및 이월공제기한연장, ② 원가분담약정제도 활성화, ③ 투자 회수 관련 추징기한 및 손실이월공제기한 연장, ④ 기술양도 및 기술양수 관련 조세우대, ⑤ 혁신창업기업 과세이연제도 등을 입법할 필요
- 2. 공정사회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경제주체에 대한 조세부

^{1) &}quot;In practice, inconsistent distributional policies and regimes are also likely to evolve towards unstable growth patterns as growth will have to rely on external stimulation(서로 부합하지 않는 분배정책과 경제체 제가 혼재하는 경우, 성장은 외부자극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장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Wage - 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Marc Lavoie & Engelbert Stockhamme(2012).

담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소득과세·소비과세·자산과세의 각 단계에서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소득과세 개편) 법인 및 지대추구자의 조세부담과 개인 및 기타의 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공평해지도록 개혁: ① 소득과세의 원칙 순자산 증가설로 전환, ②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세무상 차별규정을 철폐, ③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대한 전면 종합과세를 시행, ④ 투자금융소득의 과세기준금액과 이월공제기한 등을확대, 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유형별(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개혁
- (소비과세 개편) 개별소비세 폐지와 세수감수하지 않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 복수 세율구조로 전환: ① 부가가치세는 과도한 면세범위와 낮은 명목세율로 인해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며, ② 개별소비세는 2002년 이후 과세대상 품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③ 특히 주로 연료용 에너지(등유, 중유, 유연탄, 천연가스등)와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세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더욱 역진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
- (상속 및 증여세 개편) 가업상속공제 및 창업자금증여 등 각종 특례성 우대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반감에 따른 개편 :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그 사후관리를 강화, ② 가업승계증여 및 창업자금증여 등 각종 특례규정을 폐지
-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세표준 및 가격체계가 복잡하지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괴리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① 과세표준 개선, ② 부동산 (주택) 임대사업자의 요건(특히 자기자본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 지대소득합산과 세(중과)를 도입
- 3.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술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지대추구와 자본축적 및 노동의 시장소외와 경제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달 세원 : ① 지대세, ② 탄소세, ③ 로봇세, ④ 데이터세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 ① 실현가능성, ② 세원의 영속성 및 안정성, ③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 등에 비춰 당장은 ④ 데이터세(플랫폼세)가 가장 적합한 신세원으로 판단. 이에 대해 추가 연구 필요

│-12.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모든 일하는 사람(노동자)들의 보호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현행 노동법 체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하는 사람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한 상황임
-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하여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만 적용하는 구조임. 때문에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 조건이 차등 적용되는 문제와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만연함
-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공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직무평가를 통해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으로 평가할 수 없더라도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임금격차는 명백한 차별로 인격침해임
-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일터 또한 보장받아야 하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물론, 안전불감증과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 제정
 -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차별을 받지 않을 않을 권리 /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 인감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배려 / 노무제공과 관련한 보건과 안전 / 보수와 일하는 시간, 장소 등 노무제공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적절한 보장 / 노무제공과 가정생활의 균형 도모 / 차별과 배제없는 적정한 보수 / 집단의사를 대변할 단체 구성 권리 등
- 2. ILO 핵심협약 및 노동조합법 재정비
- 3. 근로기준법 1명 이상 사용 사업장 전면 적용
-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적정임금 및 안전 보장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
 - 적정임금을 위한 가)'차별과 배제 없는 적정임금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 산재 기업 엄중한 책임과 의무 부과, 위험 외주화 근절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 현황과 문제

-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농지투기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함. 농지투기 문제는 소위 'LH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남.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의 농지개정 촉구로 인해 일정부분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체험·영농목적, 농업법인을 통한 소유, 상속 등으로 여전히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와 농지투기 가능성이 열려있음. 아울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실태 또한 불투명해 전수조사를 통한 확인이 절실한 상황임
- 지방소멸(농촌소멸)과 제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농업과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이어 져 옴.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농산촌 지역의 소멸 속도가 가속되면서 '빈집' 의 증가와 농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climate change) 현상(이상기후-이상절기-이상기온-이상일기)으로 농업생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식량가격 상승과 수입곤란 사태를 가져오며, 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 경작지까지 감소시킴
- 주요 농산물의 반복되는 가격폭등락 현상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음. 전체 농가소득 중 농산물판매로 얻게 되는 농업소득(26.2%)이 이전소득(31.7%), 농외소득(36.9%)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격문제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임. 농가경영 안정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농산물 가격정책이 마련되어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음. 나아가 농민들에게는 생산비 보장과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함
-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와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절실한 상황임

- 1. 농지 공개념으로서의 농지법 전면 개정
 - 상속농지 신고제, 농업경영계획 수립 및 농업경영 준수의무, 농지전용제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 소유 금지,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비율 증대, 비농업인 재산권 행사 제한, 매매/증여에 의한 취득 시 공유지분 농지소유 전면 금지
 -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유 향상,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규정 강화(국토개발 시 농지전용 의제 규정 개정, 농지전용 규정 강화 등) /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2.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 확대로 가격안정 추진,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약 $4\sim22\%$ 에서 약 5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재생산을 위한 기본 재원

을 보전하고, 농산물의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화하며 국가의 책임을 제고, 대상 품목: 쌀, 보리, 밀, 고추, 배추, 무, 양파, 대파, 당근, 마늘, 사과, 배, 감귤, 시설채소 주산단지 주요품목 및 월동작물 등

- 3.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 30%로 확대, 화학비료·농약·항생제 각각 50% 감축, 전체 논농사(77만 8,734ha)를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인상, 친환경 쌀을 전량 공공수매하여 공공급식에 공급
 - 공익형 직불제를 3가지 유형으로 재정립, 제1유형 : 식량자급,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 제2유형 : 농업생태, 농촌경관 직불, 제3유형 : 농촌공동체 유지, 농촌안전망 관리(농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직불,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도모, 기후·환경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환경보전, 경관유지, 생물다양성등 공익적 기능 극대화,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 무농약 지속지급, 지급면적 확대와지급금액 인상, 경관보전 및 논활용 직불제 : 대상품목 및 지급면적 확대

4.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 5년 임기 동안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식량자급률) 30% 달성과 목표치 법제화, 목표 치 및 실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 : 국회 동의 등 책임 방안 마련,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이행점검 체계 구축, 종합목표가 어려운 경우, 품목별 식량자급 확보 계획 수립하고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와 실현방안 제시, 자급률 목표 치 달성을 위한 농지보전, 소득안정, 농업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5.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GMO 완전표시제 도입

-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 기본법은 먹거리 기본권을 위한 제도·정책·대책에 관하여 기본원칙·준칙·대강·방침을 명시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 거버넌스 먹거리 종합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 확대, 활동의 지원
-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까지 완전표시제 대상 확대, GMO 완전표시제 실시 후, 국내 소비자의 GMO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Ш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Ⅱ-1. 강제수용택지 공영개발 강화

□ 현황과 문제

- 70년대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빠른 시간안에 공급하기 위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및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을 부여해왔음
- 강제수용권 이외에도 논밭임야를 아파트·상업업무 용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변경권, 공기업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LH·SH 등에 부여해왔음. 이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고 1990년 이후로는 집값도 안정됐음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개발된 판교, 마곡 등 2기 신도시에서는 공기업조차 저렴한 주택이 아닌 원가보다 비싼 분양가를 책정, 무주택서민에게 바가지 씌우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음. 강제수용한 택지도 절반 정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며 땅장사 비난을 자초했음. 그 결과 서민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은 늘지 않고 공공주택의 부풀려진 분양가가 기존 주택가격을 자극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토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차도 분양가가 적정가격보다 채당 1억 이상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투기 과열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공기업인 성남도시공사가 100%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특혜로 넘겨 막대한 부당이득들 안겨준 대장동 개발 부패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함
- 정부와 정치권이 대장동 방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그쳐 강제수용택지의 공영개발 및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매우 미흡

- 1. 공공 민간 공동개발 금지 및 100% 공기업 주도 공공개발
- 2.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중단 및 100% 공공주택(50% 30년 장기임대, 50% 토지임대건물 분양)으로 공급
- 3. 택지개발 사업비 및 아파트 분양가 상세내역 온라인 상시공개
- 4. 개발이익 발생 시 국고환수(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및 부과율 50% 인상)

Ⅱ-2.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개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개발은 민간주도로 진행되어오며 불로소득 사유화가 문제되어 왔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이 택지를 강제수용해주고 사업추진은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민관공동개발이 허용되면서 공공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보전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민간특혜사업으로 비판받는 상황
- 민간소유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대부분 용도상향, 용적률 증가 및 건폐율 완화 등이 불가피하고 이는 관할지자체장의 인허가 사항인 만큼 공공의 지원없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때문에 공공의 결정에 따라 토지이용가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는 공공이 환수, 무주택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그런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급확대를 내세워 용적률 완화, 동의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의 정책지원이 따라가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한 불로소득이 민간토지소유주 와 건설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도 빠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통한 공급확대라는 명분으로 층수 및 건폐율 등의 완화, 행정의 계획과 절차 지원 등의 공공지원계획을 내놓았지만 개발이익 환수장치 개선책이 부재하여 개발 특혜 논란 불가피. 또한 세입자와 원주민 등의 내쫓김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단계에서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상향하고, 이주대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완공 후 분양 아닌 선분양도 문제. 수억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홍보성 기사와 모델하우스, 분양광고에 의존하라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이며 웃돈거래 등 투기만 부추길 뿐임. 선분양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부실시공, 웃돈거래에 의한 투기 조장 등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어왔음. 그나마 선분양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규제가 시행될 때는 소비자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행정동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고,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매우 유명무실함

- 1.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50% 환수
- 2. 신규주택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 3. 무분별한 용도지역 종상향 및 용적률완화 금지(공공기여 비율 50%로 강화, 현물납부)
- 4.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토지소유자 동의율 90%이상 강화 및 상생지원정책 마련

Ⅱ-3. 무주택서민 주거권 강화

□ 현황과 문제

- 주거불안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거품 제거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하위 20% 이하 가구 의 50%가 무주택가구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97만²)원인 상황을 감안하면 절대적으 로 주거비 지원확대 및 다양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확보가 절실함
-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비 지원대상이 증가했지만 2022년 기준 총 132 만 가구에게 월평균 14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금액과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함
- 공공주택 재고율도 5% 수준으로 매우 낮음.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이 2020년 기준 170만호로 재고율 8%를 달성했다고 밝힘. 하지만 이중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원하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은 94만호에 불과함. 나머지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주택, 6년~10년 단기임대 행복주택, 전세금 지원 등 제대로된 장기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2015년까지 거의 없었으나 2016년 이후 정부의 매입임대 정책 확대로 2020년 18만 가구까지 증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으로 매입가격이 서울의 경우 호당 평균 2억원에 매입되고 있고 비싼 경우 5억원까지 나타남. 게다가 민간업자와 공공사업자가 매입약정 후 건설된 주택을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입하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무분별하게 매입임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부패비리가 매우 우려됨. 실제로 SH, LH 매입임대 관련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검찰·경찰수사가 이루어집
- 10년주택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된 주택정책으로 임대정책으로 볼수 없음. 더군다나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원가 기준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 비용을 감당못하는 입주민들은 내쫓기고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상황. 도입취지인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당초 입주자모집 시 제시한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되어야 함

- 1.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월평균 20만원 이상 주거비 지원
- 2. 토지임대 건물분양, 30년 장기임대 등 다양한 규모와 공급방식으로 공공주택 재고율 20%까지 확대
- 3.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폐지 및 경매방식 우선 매입
- 4. 10년주택 분양전환 시 최초주택가격 기준 분양전환가 책정

²⁾ 통계청,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Ⅱ-4. 지방중소도시 중심 도시재생사업

□ 현황과 문제

-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는 국토 및 도시의 온갖 사회문제, 주택문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되고 있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대도시를 필두로 중소도시를 망라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음
- 2017년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법 34조에 따라 선도지역 13곳이 특례로 지정되었고 일반지역 33곳이 선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일반지역은 지자체여건에 맞는 장소 중심형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기반형 이외에 근린형을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며 사업비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거의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중소도시에는 사업비 규모가 적은 우리동네살리기나 주거정비지원형과 같은 소규모 근린재생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지역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을 암시함
- '재생'이라는 사업을 주관해온 토지주택공사는 수행기관이자 평가기관이자 국토교통 부로부터 도시권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탁받아 동시에 진행하는 거대공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관할지역이 국토부 소관이냐 농림부냐 해수부냐에 따라 동 일한 재생사업을 놓고 수많은 기구(LH, SH를 비롯하여 농어촌공사와 여타 이외의 어촌공단 등)가 제각기 추진하며 조직만 비대해져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동일한 재생사업을 다양한 주체가 나눠먹기식으로 추 진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도시재생 현장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현장활동가들(코디네이터 및 센터직원/활동가들)은 한시적인 계약직에 불과함.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11 개월만 고용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의 안정성은 존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도 1년 이상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1.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구의 독립적 기구로 일원화 및 광역단위의 광역시도와 센터에 결정권과 책임, 권한 적극 이양하고 강화
 -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 비중과 구조를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도시 중심으로 전환
- 2.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전문 활동가직 신설과 활성화를 통한 안정화

Ⅱ-5. 올바른 부동산 시장 진단 위한 통계 구축

□ 현황과 문제

- 2017년경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작됨. 그러나 대통령은 "부 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하락할 정도 안정적이다",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 으로 낮추겠다."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냄. 이에 경실련은 현 정 부 3년(2017.5~2022.5)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했으나 국토부는"14% 상승률이 맞다"라고 해명함. 국토부의 반박에도 국민 대다수는 국토부 통계에 심각 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됨
-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 또한 문제임.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의 통계가 필요할 만큼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장이 아님. 그럼에도 주간동향은 월간 동향보다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 행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 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공시가 제도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공시가제도는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와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친 '공시가격'제도로 운영됨. 주택은 시세반영률 70%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시세반영률 40% 수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함.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게 됨
- 국토부 아파트값 통계와 공시가 제도 모두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끼리 서로 다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임. 정부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4년(2017.5~2021.1)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에 불과함.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아파트값은 79%, 공시가격은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 부동산 통계 표본과 산식을 모두 공개검증
- 2. 부정확한 수치로 시장의 혼란만 일으키는 주간통계는 즉시 폐지함
- 3.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
- 4. 모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이상으로 제고

Ⅱ-6.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및 컨트롤타워 설치

□ 현황과 문제

- 우리나라 건설산업 종사자 약 200만 명 중 대부분인 약 150만 명이 건설노동자이고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에 해당함. 건설노동자는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안전과 품질을 담당함에도 근로 여건은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용직이고, 고용 여건 개선 을 위한 제도개선은 매우 더딤. 오히려 건설업은 기능인력 양성은 팽개치고 인력 부 족을 빌미로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내 국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내국인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과 사정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이 절실함

- 1.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인력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치
- 2. 내국인 고용여건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적정임금제 적용)
- 3. 외국인 고용은 고용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시행이 불가피함
- 4.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을 위한 인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 부여

Ⅱ-7. 직접시공제 정착

□ 현황과 문제

-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되어져 있음. 건설공사 수주대상을 보면 종합건설업은 주로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은 주로 하도급을 수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에는 유례없는 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비판받아 왔음. 건설업체의 영업(수주)범위를 법률로 규제하다 보니 종합건설업은 하도급방식에 만연되어 시공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불공정행위에 노출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였음.
-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말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비로소 폐지되었으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원도급 수주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직접시공 정착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는 70억 미만 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10%~50% 이상)되어 있을 뿐, 직접시공 효과가 큰 100억 원 이상 중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적용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하도급 관행을 묵인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에서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건설사를 '브로커'로 부르고 있음.

- 1. 공공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서에 직접시공 최소비율 명시
 -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직접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직접시공제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직접시공제는 입찰 브로커 감소, 품질향상, 공기 준수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또한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감소 등의 중대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됨.
- 2.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100억 이상에 대해 원도급업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해야 함.
 -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사는 브로커가 아닌 시공능력있는 건설업체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노동자는 원도급업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늑장 지급, 안전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음.

Ⅱ-8. 계속비계약방식 적용 원칙 실현

□ 현황과 문제

- 국도건설, 철도건설 등과 같은 대형SOC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준공 지연(공사기간연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 이를 위한 방편으로 장기계속계약 방식이 악용되고 있으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임.
-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 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 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해 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임
- 공공건설공사가 졸속 추진되고 공사 기간이 수십 개월 이상 늘어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이라는 예산 배 정방식 때문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업착수를 가능케 하여, 묻지마 식 무분별한 사업발주로 인하여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국가 예산낭비 및 건설업 체 손실을 증가시키고 있음.

- 1. 공공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원천 배제하고, 총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사업추진이 가능한 계속비계약 예산편성 원칙을 적용해야 함.
 - 국가계약법은 계속비공사를 우선 집행토록 하였지만, 토건 관료는 계속비 예산방식이 아닌 장기계속 예산방식을 우선하여 집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요구됨.
- 2.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계속비공사가 아닌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사업방식에 대한 상시 평가를 수행하고 장기지연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책임성 부여해야 함.

Ⅱ-9.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폐지

□ 현황과 문제

-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SOC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국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음. 필요한 SOC시설물은 국 가에서 계획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함. 이러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사업추진단계별로 특혜시비가 있으며, 그 결과 고비용·비효율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민자사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박근혜 정부에서 혈세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도(MRG)가 BTO-s(수익공유형), BTO-rs(위험분담형)의 변형된 형태로 부활시켰고, 문 재인 정부의 지자체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민간사업자에 의해 사업이 제안되는 민간제안방식은 SOC시설물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관료 유착, 특혜 제공 등 부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해외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폐지되어야마땅함.

- 1.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방식 폐지
 -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방식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최초 제안자 낙찰을 위해 각종 특혜가 제공되어야 하는 등 부패 유발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함. 민간투자법의 목적대로 필요한 SOC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시 방식으로 시행함이 타당함.
- 2. 단독 입찰 시 유찰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민자사업 대부분은 수조 원의 최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과 달리 단독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결국 담합을 유발하며, 경쟁을 통 한 재정 절감을 가로막아 단독 입찰 시 유찰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함.
- 3. 현행 BTO-a(수익공유형), BTO-rs(위험분담형) 방식은 법률적 근거 없이 주무관청이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운영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즉시 폐기해야 함
- 4.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상시적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함.
 - 민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평가위원 실명제 및 명단과 평가결과, 실시협약서, 협상단 실명제 및 명단과 협상회의록, 협상 결과, 공사비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 포함)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해 사회의 감시와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함.

Ⅱ-10. 건설사업 사후평가 정상화(민자사업 포함)

□ 현황과 문제

-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기성액이 연간 260조 원을 상회하여,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 분야임. 그중 공공부문 기성액은 76조 원('19년도)으로 전체의 약 30% 정도이지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은 민간부문까지 견인하기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런데 공공건설공사는 사업발주에만 급급할 뿐,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효율적 사업 집행 및 사후평가 등에는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 이에 납세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업 고용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공공건설산업 제도 혁신이 절실함
- 국회의원,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토건사업 등 개발 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사회적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령은 없음

- 1. 공건설사업 300억 이상 사후평가 법제화 및 미이행 시 처벌
 -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는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5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의 기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이에 사문 화된 사후평가를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법령화하고 미이행 기관은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부여해야 함
- 2. 민자사업 완공 후 5년 이내 사후평가 실시.
 - 특히 민자사업이란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사업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사후평가 대상으로 적용해 완공 후 운영 5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함.
- 3. 사회적 갈등과 주민피해를 유발한 주요 사업에 대해 준공 직후 사업 전반에 대한 백 서발간 및 공개를 의무화
 - 새만금 간척사업,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으로 제어하기 위해 사회적갈등과 주민피해를 유발한 주요 사업에 대해 준공 직후 사업 전반에 대한 백서발간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Ⅱ-11. 공공사업 임금체불 방지

□ 현황과 문제

-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182,257개 사업장에서 658,184명, 약 2조2,577억의 임금이 체불되고, 장비-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약 5조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가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임.
-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거의 무용 지물 수준임. 또한, 발주자, 원청, 하청, 장비·자재업자 4자 합의에 따른 임금 직접지 불도 협상력이 없는 노동자와 장비-자재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 그리고 현행 국가계약법 제22조(지출의 절차)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하도급법 제34 조(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등 공공사업은 현금으로 결제해야 함.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실적은 2021년 654조 원에 이르나, 현금이 아닌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로 만기일이 지정된 변형된 어음에 불과함.
- 상생결제시스템은 1·2차 사업자에게는 전달이 원활하나 근로자·장비·자재 등 3·4차 하위사업자에게 전달된 실적은 거의 없음. 장비·자재 등 영세 하위 사업자가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하면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함.
- 공사비의 70%까지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제도도 체불의 구조적 원인. 현장 특성상 노동자나 장비대는 모두 선급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나중에 하도급업체 부도 등의 상황 발생 시 체불로 이 어질 수 밖에 없음

- 1. 건설임금 체불 방지위하여 발주자가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함.
 - 약 80조 원의 공공공사의 직접지급이 시행된다면 하도급, 장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 면제로 연간 4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절감됨
 - 공공사업은 100%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금 결제방식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함에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은행과 약 정을 맺고, 이자까지 부담시키는 상생결재시스템은 퇴출해야 함
- 2. 선급금 지급률은 현행 최대 70%에서 10%로 인하(최대 20%까지 허용)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Ⅲ-1.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 현황과 문제

-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여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지역간 불균형하게 분포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가 발생(예컨대,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별 차이)
-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이용량의 증가와 고령화 확대 등으로 인해 보건 의료 인력(의사와 간호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함. 인구 대 비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 대비 0.61배로, 활동간호사 수는 0.47배, 활동 치과의사 수는 0.64배, 활동 약사 수는 0.86배임
-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와 인구노령화, 소득증가, 새로 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의료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의사인력은 의 료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2000년 이후 오히려 10% 감소함. 지역 취약층 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의사인 건비 급증으로 민간의료기관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1.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3천 명인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천 명 수준 으로 증원
 -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여 공공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 해소
 - 현행 50명 내외 소규모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
- 2. 공공병상 20% 확충 및 공급기반 마련
 - 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려 지역주민에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을 보장
 -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공공병원의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시설투자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신증축에 대해 일정 기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 제함

Ⅲ-2.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일부 개편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소 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는 근로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 차 소유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가입자간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소득과 재산 등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면제는 불합리함
-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에도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는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 고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비용효과성 검토 없는 무분별한 등재로 보장률 개선은 답보상태임
- 의약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고, 사용량 많아 건강보험 지출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복제약 가격이 높아 제약사가신약개발보다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으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낮음
- 건강보험제도 운영이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보다는 의료공급자의 안정적인 수 익창출에 초점이 맞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과정에 서 이익단체가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 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필요함

- 1.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일원화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및 보험료 납부 면제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폐지 등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일원화
- 2. 의료적 필수 비급여를 법정화 및 비급여없는 공공병원 도입
 - 비급여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해 혼합진료 금지원칙 도입하고, 의료적 필수 비급여를 법정화하여 종류와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함.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
- 3. 포괄수가제를 전 병원 적용,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총액제 도입
 -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을 가격과 효과 기준으로 엄격하고 관리하고 제약사 이익보 장을 위한 가격 인상 정책의 남용 금지. 약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만성질 환 약가 거품 제거
- 4.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급여비 국고지원
- 5.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자치조직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정책 및 가격 결정 구조에 이익단체 배제하고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구조를 가입자 중심 으로 개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하여 보험자의 재정관리 역량 제고

Ⅲ-3. 의료이용체계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 빈도와 양에 따라 급여비를 지급하는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의료기관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시행하고 이는 병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동네의원의 영세화로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의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상승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체계가 부실해지는 결과 초래
- 의학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의료 쇼핑, 과잉-과소-중복 진료가 상존하여 약화/의료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소외 계 층도 발생하여 건강불평등 심화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종감염병에 대처하고 환자의 증상을 감별하는 최초 접촉 의사의 역할과 환자 교육과 상담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전염병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 인 보건의료서비스(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활 등)가 제공되어야 함
-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복지와 의료의 분절적 시스템으로 인해 성과는 미미함.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일차의료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ㅇ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원하는 국민 모두 주치의로부터 체계적 건강관리 받도록 제도화함
 -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별 사업 시행
- 2. 지불제도 개편 및 적절한 평가체계 구축(목표 기한 5년)
- 3. 일차의료 전공의 교육에 정부 지원방안 마련, 타전문의 재교육 실시

Ⅲ-4.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현황과 문제

-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행정 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4개의 조직이 있으며, 방역대응 초기에 중대본과 방대본이 서로 엇 같린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는 등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됨
-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감염 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그 소속하에 예방접종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본이나 방대본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위원구성이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12인)과 전문학회나 협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 원(17명)으로 구성되어 전문가들이 그간의 대응상황을 되짚어보고 적정한 대응책을 적극 발굴하여 제언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음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공무원과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시도지 사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이 위촉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수는 상당히 미미 한 수준임. 예방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등 국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 지 전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함이 필요함

- 1.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및 업무 분장의 명확화
 -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의 방역업무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실시
- 2.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역할 명확화
 - 전문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민간위원의 수를 보다 확대하여 의료계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전문적 자문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현장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의사결정구조 확대
- 3. 지역거점병원 감염병 상시 치료체계 구축

Ⅲ-5. 의료분쟁조정 내실화

□ 현황과 문제

-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하 '중재원')>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함. 의 료소송 기간의 장기화와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와 의 료자원 낭비 방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함
-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설립 목적과 다르게 지난 5년간 실제 조정성립률은 34%에 불과하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낮은 배상금이 책정되어 환자 만족도는 매우 낮음
- 특히 전문영역인 의료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감정이 중요한데 감정부의 진료기록 감정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 중재원은 감정부와 조정부로 조직이 구성되는데, 감 정부는 의사인 상임감정위원과 비상임감정위원(의료인, 검사, 소비자단체, 변호사)이 감정회를 열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함. 그러나 상임감정위원의 역할이 과도하고 감정 회의의 경우 구성원의 적법한 의결 없이 감정결과가 도출되거나 부실감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횡이 발생함
- 중재원의 감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재원에 감정신청을 제안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당사자의 선택권이 없는 형 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중재원에 감정의뢰를 하나 재판과정에서 다른 기 관으로 감정을 이관함
- 중재원의 감정부서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자체 감사팀의 감사도 받지 않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폐쇄적 운영이 의료분쟁조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임

- 1. 중재원 해체 및 소비자원으로 조직 일원화
 - 기능이 중복되는 소비자보호원 의료팀과 통합하여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하고 소비 자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로 업무 일원화
 - 감정위원을 전원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과거 감정회의 및 감정서 작성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 등 감사 실시
 - 감정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소수의견 필수 기재 의무화.(상임감정위원의 의결권 제한)
 -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액 현실화 유도방안 마련

Ⅲ-6. 보편적 아동 돌봄 강화

□ 현황과 문제

-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며, 한부모 가구나 장애아동 가구 등 가구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 자녀양육 비용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성장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7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의 아동 기준인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수당법의 목적 과도 부합하지 않음
- 보편적 아동수당 외에 선별적인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도가 있 으나 포괄적인 아동수당 체계에 속하지 않은 별도 정책으로 존재해 관리운영과 수 급자 모두에 행정적 낭비와 혼란을 가져옴. 특히 수당별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협소 해 지급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양육 부담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임

- 1.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법적 아동 연령인 18세 미만으로 확대
- 2.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아동수당 체계로 통합하여 행정비용 절감 과 수급자 낙인 효과 최소화
- 3. 장애아동수당과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
- 4.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 제정
- 5. 아동(3~6세) 돌봄과 교육의 통합(교육부 제공)
- 6. 가족돌봄휴가 연30일 확대, 휴가급여 최저생계비 제공

Ⅲ-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금의 근본적 개혁

□ 현황과 문제

-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에도 현 정부는 이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리스크로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수수방관하여 왔음
- 한국의 연금문제는 (노후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미래의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던 서구 국가들과 달리, 연금재정안정 문제와 노인소득 부족 문제가 동시에 심각하다는데 개혁의 어려움이 있음. 1998년 처음 국민연금재정재계산 제도가도입되었을 때와는 달리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다양화되었음에도 각 제도의 역할이나 성격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 못한 채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직역연금과 일반 국민연금간의 연금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으며, 기득권층인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정부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조세를 지원하는 것 역시 상식에 반함
- 연금재정, 노후소득부족, 불공정성이라는 복잡한 문제하에서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는 정체되어 왔는데, 이는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무책임한 행태라 할 수 있음. 각론에서의 차이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큰 틀에서 개별 연금의역할과 개선방향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 1. 범 정부차원(소관 부처 합동)에서 모든(공·사) 연금제도를 동시에 고려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축 및 시행
 - 합의체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이행 시점 명시
 - 논의 내용에 기초연금의 성격(부조인지, 수당인지)과 지속가능성, 퇴직연금의 공공 성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사회적 합의체의 결론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재정재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적정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

Ⅲ-8. 여성장애인 일자리 정책개선

□ 현황과 문제

-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임. 근로능력 이 있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 스가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유인이 있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1991년 고용의무제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이라는 수요는 있으나 적합 인력 부족, 고용관리 어려움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체 비중이 높음. 또한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취약성은 더욱 심각함
- 2020년 기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1%로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30%p 가량 낮음. 지난 10년간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월평균은 임금은 남성장애인의 50% 수준으로 2019년 기준 월평균 109만 원수준으로 매우 적음.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이며 대부분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

- 1.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성별·장애특성별 노동 수요에 대한 조사 실시
- 2. 고용과 복지서비스 결합 제공
 - 기업특성별(기업 규모, 업종 등) 요구사항 조사 : 고용의무제도 시행으로 강제 할 당된 장애인 일자리의 85% 이상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며 이에 대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용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기업특성별 필요 서비스 수요 파악이 중요
 - 노동공급(장애인)과 노동수요(기업) 간 니즈 간극을 보완하는 다양한 고용서비스 확충

Ⅲ-9.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현황과 문제

- 우리나라는 보육과 돌봄서비스 확대정책을 시행하면서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해 옴.
 그러나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웠던 정부는 시장화를 통해 민간 참여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서비스 품질관리, 접근성, 종사자 처우, 이용자와 노동자의 인권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증대됨
- 사회서비스의 재원은 공적으로 조달되므로 공공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통한 관리와 통제 기전이 작동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공립 복지시설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에 한계 있음. 2018년 기준 19,803개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이 88.3%, 공공이 11.7%를 차지. 이 중 공공이 직영하는 시설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19,803개소 중 0.9%(166개소)에 불과하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10.8%(2,143개소)임
-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주체(공공/민간)에 따라 종사자 처우가 상이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음. 민간 서비스 공급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 있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 불만족으로 이어짐
- 사회서비스의 가격은 사회보험 방식의 수가나 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품질의 차별화에 따른 시장가격의 차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표준 모델 마련이 필요함.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해 자치단체가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재활 등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을 직영하는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위상과 의미가 대폭 약화됨

- 1. 공공이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관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이 직영하는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최소 20% 이상 확충
 - 돌봄서비스 영역의 시급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
- 2. 사회서비스원의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보장
 - 광역 단위 사회서비스원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설치

Ⅲ-10.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 현황과 문제

-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소비자를 후견인 입장에서 보호해 주어야한다는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생활 주체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전환됨. 그러나 시장이 균형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전제에서의 소비자정책 이념인 '주권론적 관점은 우리 시장에 부합하지 않음
- 국무총리 소속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3년 단위) 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행함.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도 동 위원회에서 수행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역할을 수행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조정한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며,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수행함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안 소비자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위원 중에서 소비자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많은 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심의·의결업무와 함께 평가업무도 수행하며, 민간위원 비중이 너무높아 위원 구성의 문제도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본래 경제적 규제를 다루는 경쟁정책을 담당하는데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소비자정책까지 담당하고 있음. 두 정책은 목적과 성격, 발생원인 정책수단 등이 서로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부처의 소비자정책을 취합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거래분야 이외의 소비자문제대응에도 한계가 있음

- 1.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소비자정책 전담부서(가칭 "소비자부") 신설
 - 소비자정책의 이념을 보호론적 관점으로 전환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소비자 정보, 안전, 피해구제 담당. 교육 및 단체 지원
 - 부당 차별, 부당 가격, 소비문화조성정책 담당 및 사각지대 포괄 지원
- 2. 소비자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관련 모든 중앙부처장을 포함하고 소비자정책 평가기관 신설
 - 타 중앙부처 소관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의 공동 운영 권한 부여

Ⅲ-11. 언론의 시청자권익 보호강화

□ 현황과 문제

-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세웠으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영방송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2018년까지임시조치제도 개선과 같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였음
- 흔히 가짜뉴스로 통용되는 허위정보에 대해 이미 미네르바 헌재 판결(2008헌바157, 2009헌바88)에서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었음. 그럼에도 가짜뉴스 대책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고 2021. 7.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징벌적 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등의 조항을 포함시킴
- 이처럼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 입법은 남발되고 있으나, 중요한 공영 방송개혁은 외면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적 제도들은 여 전히 상존함

- 1. 방송언론에서 시청자권익보호제도의 정비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개입을 배제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구조 개선
- 2. 허위표현(가짜뉴스) 처벌에서 소수자에 대한 증오표현 대응으로의 전환
 - 명예훼손, 모욕죄의 형사처벌 폐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별시정기구를 통한 증오표현 대응
- 3. 임시조치제도에서 발화자에 대한 권리(이의제기시 즉시 게재권, 손해배상청구권) 실 현

Ⅲ-12. 신기술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현황과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여 개정되면서 가명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양립가능성활용근거규정 등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미비함. 유럽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프로파일링 및 자 동화된 처리에 있어서의 보호조치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임. 개인정보보호 법은 정보통신망법을 모두 폐지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수준의 보호조치를 담을 것 을 의결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개 부대의견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 음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신용정보법은 독자적인 거버 넌스를 인정하여 주었으나, 이후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는 등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후 민감정보 의 활용에 대하여 동의 없이 가명처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하 였고, 이 와중에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마이데이터산업은 정보주체를 위한다는 명목 과 데이터 경제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전 영역에 확대되어 오히려 정보주체의 정 보통제권을 위협하는 상황임
- EU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에서도 국외 이동, 가명정보의 파기 등의 문제점들이 언급된 바 있으며, 이루다 사건에서 드러났듯 자동화된 의사결정과정과 처리, 프로파일링, 프라이버시 설계 및 기본설정,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신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부재함

- 1. 신용정보법 개정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신용정보법상 과대해진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기관에 한정
 -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와 무관한 사업의 허가, 등록 규정과 관련된 규제 로 제한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 권리강화
 - 개인정보주체의 고지, 열람, 파기권 강화
 - 가명처리를 안전조치의 하나로 규정, 가명처리시 보완적인 안전조치 도입
 - 자동화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배제권 등 도입
 - 민감정보규정을 명확하게 입법하고 처리절차 개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의 도입

Ⅲ-13.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자동차 리콜제도 운용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안전상 문제를 일으키는 제작결함에 대해서는 제작사에게 리콜을 조치하도록 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리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됨. 상품성 결여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는 '무상수리'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차량 소유주가 문제를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를 유발하는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차주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차량을 전량 회수하는 강제적 '리콜'이 필수적임
- 리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무상수리 권고를 조치하거나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무상수리 권고를 조치하여 사실상 기업이 리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자동차의 제작결함은 자동차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제재수단이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사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리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매우 미흡함
- 자발적 리콜은 해당 제조사가,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행하게 되어있는데 자발적 리콜은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제조사가 선택할 이유가 없는 구조이고 정부도 강제적 리콜에 적극적이지 않아 리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자발적/강제적 리콜제도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등 법제 정비
 -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을 할 제도적 장치 마련
 - 강제적 리콜시 자발적 리콜과의 차별화된 과징금 부과로 제제 강화
 - 리콜의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 즉시 시정 지체 시 제재 수단을 신설
 -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 조사·관리·감독 강화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사유 강화를 통해 제작사와 위원간 유착 예방 장치 마련

Ⅲ-14.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 현황과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이 요구되어 왔음. 정부도 지난해 집단소송법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업의 반발로 인한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 대처로 입법 논의는 지지 부진한 상황임
-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 전방 위적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으며 소송개 시 절차도 복잡함.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해 소송을 위한 시간과 비 용 소모는 크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함. 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분쟁 해결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음
-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직접 입 증해야 함.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인적 물적 재원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현대 사회에서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결함 및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1. 집단소송법 즉시 제정
 -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 시한을 3개월로 설정하고 소송 불허 이유 상세 기재
 -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지액의 상한액 규정(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 입증책임 전환 내지 경감, 증거개시 등 포함
 - 상대방 불응 시 직권증거조사,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문서제출명령·검증·증거개 시 인정 권한 부여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감독 방안 마련

Ⅲ-15. 이용자 보호위한 상품권법 제정

□ 현황과 문제

- 1961년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후 38년만인 1999년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함. 그러 나 「상품권법」 폐지의 취지와 달리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함
-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이 불투명해졌으며 통제가 불가능함. 상품권의 직접적 규제 법률의 부재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비정상적인 성장했고 50만 원권과 같은 고액상품권이 증가하여 지하경제가 확대됨에도 음성적 거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현재 「인지세법」에 따라 국세 청에 인지세만 납부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한 구조임
-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70%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함. 상품권 사용가능한 가맹점의 확대로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지표에 상품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품권은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은데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할 경우 추적이 어렵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접대비(거래처), 복리후생비(직원), 기부금(사회공헌), 기타비용(기타)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탈세 및 불법로비 등 범죄에 사용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함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가 부재한 반면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불로소득을 얻고 있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매년 수백억 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까 지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됨

- 1. 상품권 거래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제정
 - 기업의 상품권 발행 신고 의무 및 정부의 관리·감독권 부여
 -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소멸시효(5년)와 일치시키고 소멸시효 미경과시 전부 상환
 - 상품권 이용자의 보호 장치 마련
 - 금융위원회의 연간발행한도 등 제한 근거규정 마련
 -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
 -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사회환원

Ⅲ-16. 소액사건 재판의 시민권익 보장

□ 현황과 문제

-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017년 1월부터 소액 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개정에 따라 소액사건의 대상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전체 민사본안 사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등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됨
-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은 일부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위헌의 소지도 있음. 이러한 소액 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사건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편익만을 고려해 민사소송상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임
- 소액민사소송의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단순히 소송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그 금액의 기준을 법률이 아닌 규칙에 위임해 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됨
- 소액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소액사건 재판은 상고 및 재항고 제한으로 사실상 2심제로 항소심이 특히 중요한데 항소를 위해 필수적인 판결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 아 1심 판결에 대한 설득과 수긍, 불복할 경우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기본권을 확보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함

- 1.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 제11조의 2 제3항 삭제를 통해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
 - 가액상고제 폐지 및 상고허가제로 변경
 -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금액기준을 법률로 상향
 - 법률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법관 증원

IV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

Ⅳ-1. 고위공직자 윤리강화

□ 현황과 문제

- 공직자 윤리강화와 부당한 권한남용을 통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 령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음.
- 4급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은 공개되고 있음. 올해 LH 공기업 직원의 광명신도시 땅투기 의혹,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음
- 경실련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의 30% 정도가 다주택자이고, 평균 부동산자산이 국민평균치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나 과연 집값 폭등에 의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냐, 부동산 실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비판이 제기됨. 실제로 청와대, 국회의원, 관련부처장관, 지자체장, 시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재산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수억원씩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수혜를 누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부동산 재산의 축소신고도 문제임. 부동산재산 신고가액 기준이 시세가 아닌 공시가 격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이 4~60% 수준에 불과한 현실. 고지거부도 점점 늘어가고 있음. 부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모두 해당 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남.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은 재산은닉과 부패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 공직자들의 윤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부당한 재산증 식이나 은닉차단 등의 공직사회 개혁으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만큼 투명한 재산공 개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공직자들의 임대사업자 겸직 을 금지하고 다주택 소유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1.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및 1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 2.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4급으로 확대 및 고지거부 폐지
- 3. 공직자 재산 신고시 공시가격 및 시장가격 동시기재
- 4.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공개 및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Ⅳ-2. 인사시스템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성폭력, 음주운전 등 7대 인사 배제원칙을 마련하며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약속하였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전후 낙마한 장관후보자가 6명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없이 강행한 경우는 무려 32명으로 둘다 역대 정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 오히려 홍영표 국회의원 등 집권여당 의원들은 지난 6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는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음
- 인사청문회는 2000년 법 제정 당시에는 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등으로 대 상이 한정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국적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6월 인사청문회법 을 개정,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함
- 하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수용여부는 대통령 판단에 따르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이 도입됨.
 이에 법 개정이후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대 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며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 결정, 내정자의 문제점 검증을 통한 잘못된 인사 채택 방지, 효율적 국가운영 유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후퇴가 아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1.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기준 명확화 및 철저한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사전질 문지 보강 및 내용 국회공개, 다양한 기관의 사전검증 등)
- 2. 인사청문회 인준표결제 도입 및 인사청문기간 확대

Ⅳ-3. 정당의 보조금제 개혁

□ 현황과 문제

- 「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 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의 여부이기 때문에 기성 대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며³), 군소정당의 출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함
- 뿐만 아니라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정도가 낮 아 유권자의 표심과 연동되는 바가 낮음
-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선거가 있는 해에 지 급되는 선거보조금은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과 중복됨
- 정치자금법 제26조에 의해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당선여 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과소대표되어 온 특정 유권자 집단의 의회 내 대표성을 높 이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1. 정당의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정
 -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도입
 -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 폐지
 - 여성, 장애인 당선인 수 혹은 비율에 근거하여 보조금 분배
 -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추천보조금 제도 신설
 -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 2. 정당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매칭하는 대응적 보조금 제도 도입

^{3)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더불어민주당 327.1억원(36.1%), 국민의힘 361.1억원(39.8%)

□ V-4.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현황과 문제

-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권력자이자 주권자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잘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학계,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선거의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음. 지역 기반이 강한 주요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비례적 선거제도의 도입이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간의 의석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지만 소규모의 비례대표 의석 유지,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례성이 약화되고 실질적으로 양대 정당 중심의 정당체계가 강화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함
-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공천제의 경우 대부분 당원에게 공직 후보자 선출권 이 없고 소수의 정당 지도부와 공천위원회가 하향식으로 공천한다는 점에서 유권자 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 즉. 비선출 당내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공천심의위원회)가 공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폐쇄적 공천관리라는 지적과 함께 당내 경선이 진행된다 하 더라도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규모와 범위,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공천관리의 대표성 및 개방성이 부족함

- 1.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바레대표 확대 및 공천제 개혁
 -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을 축소하고 당원 및 일반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천 주체의 다변화 추진
 - 공천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90일), 그 밖의 선거(선거일 전 60일)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 법정 시한을 법제화
 -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혹은 비리 혐의로 당선무효 될 시에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정당의 공천책임제도 도입

Ⅲ-5. 전관예우 방지

□ 현황과 문제

- 판사·검사·헌법재판관·경찰관 등의 관련 공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전관예우'가 오랜 사회적 비판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 검찰 및 법원 고위직들은 퇴직 후 대형로펌에 거액의 돈을 받고 영입되어 단기간 내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최근 이슈가 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출신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이경 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력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나타남.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공직퇴임변호사가 일반 기업체 등에 고용된 상태로 거액의 대가를 받는 형태의 전관예우가 문제로 불거짐. 이 같은 전관예우 사례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며, 퇴직 5년 전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변호사가 조세 포탈이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몰래변론' 또한 심각한 문제임.
 작년 12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몰래변론 혐의로 최초 구속기소 되었으나실효성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실정임

- 1. 변호사법상의 수임 제한 기간을 퇴직 3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
 -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기간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 신설
 - 수임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몰래변론은 그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함
- 2.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5년 전부터 취업대상심사기관에 퇴직일부터 5년가 취업할 수 없도록 연장

Ⅲ-6.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부여함. 판결문 공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의 한 축을 이루지만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는 2023년에 이르러서야 공개하도록 근거가 마련됨
- 형사 사건의 경우 여전히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나의 사건이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미확정 판결서 미공개로 변호사들조차 알음알음 해당 사건 판결을 구하러 다니는 실정임. 하급심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 기 위하여 도입됨. 그러나 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 배심원평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

- 1. 형사사건 미확정 판결서 온라인 공개 및 열람 수수료 폐지
- 2. 국민참여재판 개선
 - 국민참여 재판의 평의 과정에서 법관 의견을 배제하며, 배심 평의에 법관이 기속 되도록 함

Ⅲ-7. 법원 인사 개혁

□ 현황과 문제

- 대법관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함.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따라 법의 해석과 판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 인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럼에도 대법관 자리는 '보수 성향의 남성 고위 법관'들이 오랫동안 점유해 옴. 최근 다양성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선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야함.
 하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후보를 제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 뿐만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 논의절차와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각 대법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음

- 1.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의 활동 내용 전면 공개
- 2.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고, 그 구성을 남성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화해야 함
- 3. 법원 조정위원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 마련

Ⅲ-8. 검찰의 중립성 강화

□ 현황과 문제

-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검찰권이 남용될 경우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경우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검찰수사는 유독 권력자들을 상대할 때면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상태임
-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귀속되는데, 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검찰인사권은 검찰의 수사가 권력 앞에서는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음
-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범죄수사는 전국적 수사 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검찰권 행사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하지만 과도한 상명하복 구조를 설정하여 개별 검사의 검찰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귀속시켜 버림
- 상급자를 향한 이의제기권이 존재하더라도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 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음.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 1.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완전히 독립
- 2. 검사동일체원칙 폐지(수사검사 이의 제기권 활용 절차를 검찰청법에 구체화, 불기소 기록 등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

Ⅳ-9. 지방자치제도 헌법보장

□ 현황과 문제

-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종류와 수준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음
-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과 사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역 간 정책경쟁을 통해 혁신을 발생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단순 중앙이 결정한 정책이나 대주민 서비스를 집행,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주민 복리와 관한 사무는 지방이 정책 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수행하도록하여 지역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집권의 위험을 분산시키며 지방이 자기책 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지방의 주 도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발목을 잡고 있음
- 개헌이 아닌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수행하자는 일부의 목소리도 존재하나, 지 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지방분권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지 방분권과제가 현재의 특별법에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음.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아 닌 개헌을 통한 헌법적 보장만이 입법권자의 침해 또는 위협으로부터 지방자치의 제도적 핵심과 본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1. 지방정부 자치권 확립위한 개헌
 - 중앙-지방정부 간 입법, 행정, 재정, 사법 권력이 분리된 헌법 구조로의 전환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형 식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로 표기
 -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 조항의 개정 및 지방재 원의 보장규정

Ⅳ-10. 지방분권 실현

□ 현황과 문제

- 1991년 여야의 대립 속에 중앙과 지방 간 정치, 경제, 문화의 양극화 해결 및 주민 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재정 권한이 국가기관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21세기에 직면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의 구축이 절박한 실정임. 특히 저출 산·고령화 문제는 대도시나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과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 나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 만성적인 고용없는 저성장은 중앙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성장전략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정책과제로 내세 우며 출범하였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 히 중앙-지방간 불균형, 중앙에 집중된 재정,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방의 재정자립 도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 중앙집권 권력구조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서 중앙이 집권하여 모든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따라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 폭 위임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함

- 1. 지방세 수입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재원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내국세 비율 22%로 상향)
 -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보통교부세 전면 개편
- 2.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대통령령, 부령 유보조항을 조례로 직접 위임하여 조례의 재정범위를 확대
- 3.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 ♥ - 11. 주민자치 실질화

□ 현황과 문제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결정에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이 조례나 규칙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 연령이 하향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폭 강화되었음
- 주민 직접 참여에 있어 법제도적 근거 없이 읍면동사무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적 자치를 시도하였던 주민자치위원회제도는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제도종언을 고함. 또 도시지역에서의 주민자치회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협력형만을 고수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함양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지 못함
-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마련하였으나,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어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음
-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규모는 평균 20만명으로 근린자 치를 논하기에 매우 부적합함. 즉 근린 생활공간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할 자치계층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임
- 1961년 군(郡)자치를 도입하여 읍면 계층은 행정계층화 되었음. 읍면동 사무소에 시 군구 행정공무원 배치 및 행정관료제에 의해 관리되면서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억제 시키고 주민 관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함

- 1.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3. 읍,면 추가 및 2.시군구를 2.시로 개정
- 2. 읍면계층에 통합형 주민자치 모형을, 통리계층에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모형을 각각 적용
-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을 주민공동체 참여의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직접참여민주 주의 및 숙의민주주의 실질화

Ⅳ-12.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 현황과 문제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격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참여정부는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함. 이후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등이 제정되며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분산정책을 추진되어 왔음
-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 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바 있음. 하지만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각해짐.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삼성동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 등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전지의 고밀개발 등도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도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정부의 해법은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등 무려 100조원에 가까운 공공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예타면제를 통한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운영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큼
- 따라서 국민혈세의 나눠주기식 퍼주기가 아니라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정책 전면재 검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전,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더욱 중요함.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낙후지 역 지원정책도 더욱 개선되어야 함

- 1. 현행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광역화 및 기초자치단체 규모 축소
- 2. 광역도시계획 통합 및 단일화된 대도시권 계획으로 개편
- 3. 국가위기지역 설정 및 지원확대(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내 국가 위기지역 지원계정 신설 등)

V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현황과 문제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남북관계 긴장 및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합의사항 이행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구축의 시작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국내적으로 법·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합의사항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면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움
- 대내적 사회갈등으로 인한 정책적 혼란과 일관성 부족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통합과 공감대 형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즉, 남북 간 교류가 축소, 위축되고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무관심을 증가시킴
- 남남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지금,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함. '남북관계발전법'등이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 됨
- 따라서 표면화된 사회갈등을 잠식시키고,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제도,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남북 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 국내적 사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과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전략으로 연계가 필요함

- 1.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
- 2.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 통한 지속적인 통일·대북정책 추진
- 3. 남북 간 합의정책 이행을 위한 '(가칭) 남북정상합의 이행 워킹그룹' 설치
- 4. 남북 평화협정 체결

∨-2.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 현황과 문제

- 2018년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우선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 광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하였고, 2019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아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를 언급하 였음에도 한미워킹그룹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임
- 경협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경협 재개를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또다시 난항이 조성될 것임. 현실적으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초기 1~2년의 신뢰구축 단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구축 과정을 통해 남북경 협 재개의 환경이 다시 조성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한 정경분리에 입각한 투자보장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된 바,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이 정상화되는 다음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및 남북 투자·교역 정상화, 개성공단 확대 및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지역 투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및 백두산·묘향산 국제관광지 개발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 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다만 북한 관광비자 발급, 남한 주민의 방북 승인신청 및 통일부 장관승인, 북한 방문 후 미국 입국 시 인터뷰를 통한 비자 재발급 등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남북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 등 안전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남측 DMZ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사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국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DMZ 내 '남북협력을 위 해서는 유엔사의 협조,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함.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및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거래 제한 등 대외적 문제도 존재 함

- 1.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개별관광 재개
- 2. 북한 SOC 시범개발 착수 및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 3. 북한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